

도난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기타) - 도난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도난보험

3. 보험의 목적

- 1) 동산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- 2) 현금 및 유가증권
- 3) 법률상의 배상책임

4. 보험기간

- 1)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이상의 3년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납입 및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- 1)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보험료의 할인·할증에 관한 사항.
 보험업감독규정 제7-77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할인·할증은 “보험료의 할인·할증기준”에 따른다.
- 2)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3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관련사항
 - 특약의 적용근거 :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 - 특약의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- (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- (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

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- 기타

- (1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- (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